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2. 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(기획감사실장)

1. 제안이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한 세무행정 수행체제의 개선이 필요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근 거

- 기획 12200-141('95. 2. 21) : 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

3. 주요골자

- 현행 세무업무체제를 부과 및 징수업무 부서로 분리
 - 세무과 ⇨ 세무과, 징수과로 분리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총무국) 제1항중 “세무과” 다음에 “징수과”를 삽입하고,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세무과는 세무행정의 종합조정, 지방세부과, 세무조사,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 처리, 부동산 평가 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징수과는 지방세징수, 세외수입총괄, 세입예산 및 결산, 지방세 체납세 관리 및 체납정리, 구금고 감독,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
<p>제5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시민과, 재무과, 세무과, (신설), 민방위과를 둔다.</p> <p>②~④ <생략></p> <p>⑤ 세무과는 세무행정 종합조정,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처리, 부동산 평가업무,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,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⑥ <생략></p>	<p>제5조(총무국) ① 징수과,</p> <p>②~④ <현행과 같음></p> <p>⑤ 세무과는 세무행정 종합조정,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처리, 부동산 평가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⑥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, 세외수입총괄, 세입예산 및 결산, 지방세, 체납세 관리 및 체납정리, 구금고 감독,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⑦ <현행과 같음></p>